

정부회계 (제3판)

추 록

(신현걸 · 노준화 · 최창규 · 김현식 저)

- 2014년 12월 15일 -

추 목 ①

기출문제

2014 공인회계사 1차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① 다음은 국가회계기준과 관련한 회계준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금비용 중 직전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증가로 인한 이자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 ② 국가회계실체의 용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용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은 용자보조비용에 더해져 프로그램 직접원가에 포함한다.
 - ③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금비용 중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은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 ④ 국가회계실체의 용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용자사업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 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2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다음 거래가 A부처의 일반회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20×3년 중에 프로그램 순원가로 ₩10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 중에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50,000, 감가상각비 ₩3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 중에 부담금 수익 ₩70,000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었다.
- 20×3년 중에 B부처에서 무상관리환으로 ₩30,000의 자산을 수증받았다.

	A부처의 일반회계	대한민국 정부
①	₩ 180,000 증가	₩ 110,000 증가
②	₩ 150,000 증가	₩ 80,000 증가
③	₩ 110,000 증가	₩ 110,000 증가
④	₩ 110,000 증가	₩ 80,000 증가
⑤	₩ 80,000 증가	₩ 110,000 증가

3 다음은 국가회계실체와 관련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한 기금에 적용한다.
- ②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예산 하에서 운영되는 국가회계 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고통합계정에 불입하고 국고통합계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 ③ 국가의 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 중 기금운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국가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국가 채무는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한 국채, 차입금이다.



- 4 다음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상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 상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상 비배분수익은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외수익으로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될 순자산항목의 금액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자산총계	₩ 1,900,000
• 부채총계	1,000,000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투자액	900,000
• 무형자산투자액	200,000
• 일반유형자산 등의 투자재원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	450,000
•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

	<u>고정순자산</u>	<u>특정순자산</u>	<u>일반순자산</u>
①	₩ 650,000	₩ 50,000	₩ 200,000
②	₩ 450,000	₩ 150,000	₩ 300,000
③	₩ 650,000	₩ 150,000	₩ 100,000
④	₩ 650,000	₩ 0	₩ 250,000
⑤	₩ 450,000	₩ 0	₩ 450,000



정답 및 해설

1. ③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연금회계준칙 제7조 ①항 4호 및 ②항)

2. ①

(1) A부처의 일반회계 재정운영표

I. 프로그램순원가	₩ 100,000
II. 관리운영비	80,000
III. 비배분비용	0
IV. 비배분수익	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80,000
VI. 비교환수익 등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180,000

행정형 회계(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부담금수익(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란에 기록하고,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정운영표에 기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형 회계(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무상이전수입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란에 기록하고,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부처에 기록된 무상이전지출 금액과 상계되어 국가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재정운영표

Ⅰ. 재정운영순원가	
중앙관서 A부처	₩ 180,000
Ⅱ. 비교환수익 등	
부담금수익	70,000
Ⅲ. 재정운영결과(Ⅰ - Ⅱ)	<u>₩ 110,000</u>

3. ⑤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④항)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4. ⑤

재정운영보고서 상 비배분수익은 비교환수익이 아니고 교환수익(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20조)

5. ③

- (1) 순자산 총액 : $₩1,900,000 - 1,000,000 = ₩900,000$
- (2) 고정순자산 : $₩900,000 + 200,000 - 450,000 = ₩650,000$
- (3) 특정순자산 : $₩150,000$
- (4) 일반순자산 : $₩900,000 - 650,000 - 150,000 = ₩100,000$

추 록 ②

1. 31쪽 전체를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4.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법(제11조)에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필요한 국가회계기준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도록 하면서 국가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회계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2009년에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0년 5월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0년 7월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발족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4년 1월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조직을 변경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년에 한국조세연구원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의 부설기관으로 통합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¹⁰⁾는 국가회계팀과 재정통계팀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팀은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을 연구하고, 실무 해석 및 질의회신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의 회계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중앙관서 및 국가재무제표 분석 및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지원하며,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수행한다. 한편 재정통계팀은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국제 재정통계기준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관련 실무해석 및 연구, 그리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통합결산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0)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http://www.gafsc.kipf.re.kr>)에서 다양한 국가회계기준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2. 203쪽 (하7줄~하1줄)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5.7 압수품 및 몰수품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표 7>과 같이 평가한다.

<표 7>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구 분	평가방법
화 폐 성 자 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비 화 폐 성 자 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3. 239쪽 <표 6>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구 분	인식기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부과과세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연부연납 또는 분납가능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몰수금은 부과시점에 그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4. 323쪽 (상 11~14줄)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몰수금은 부과시점에 그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5. 325쪽 (하 1~2줄)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6. 326쪽 (상 1~3줄)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정 오 표		
페이지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35쪽 상 3줄	④ 국가회계기준센터	④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70쪽 상 11줄	과태료 ₩100,000	과태료 ₩80,000
273쪽 하 2줄	제재금수익은 <u>납부한 금액</u>	제재금수익은 <u>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u>
273쪽 하 1줄	반면에	그리고
282쪽 상 6줄	제5장	제9장

추 록 ③

2014년 11월 29일부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내용 중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회계(제3판) 교재에서 수정해서 공부하실 부분을 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회계 제3판 교재로 공부하신 수험생들은 아래 추록의 내용만 업데이트하시면 2015년 2월 15일 1차시험을 대비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명칭 변경 및 범위추가

(1) 재무제표 명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자산변동표

(2)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범위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식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식, <u>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u>

(3)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는 자료 용어 변경 (제3판 교재 p159 상 4째줄)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u>재무보고서</u> 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u>재무제표</u> 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어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재무보고서	결산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2.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내용

(1) 결산서 용어와 구성내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재무보고서	결산서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필수보충정보 4. 부속명세서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2) 결산서의 제출기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결산서의 감사위원 제출	출납폐쇄기한 이후 80일(익년 5월 19일) 이내	출납폐쇄기한 이후 80일 이내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기한	익년 6월 30일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첨부)	익년 5월 10일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첨부)

3.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재정법 제8조)

(1)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출납사무 완결기한	없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2) 제3관 교제 수정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68 상 4째줄	한편 지방재정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출납폐쇄기한이라고 한다.	한편 지방재정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출납폐쇄기한). 그리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납사무 완결기한).
p72 하 2째줄	20×5년에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수납이 20×6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20×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20×5년에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수납이 20×6년 2월 10일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20×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p73 하 2째줄	20×5년에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수납이 20×6년 2월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를 20×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20×5년에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수납이 20×6년 1월 20일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를 20×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p156 상 8째줄	출납폐쇄일(2월 말)	출납폐쇄일
p156 상13째줄	결산승인신청(6월 말)	결산승인신청(5월 10일)
p156 하 4째줄	한편 <표 3>의 출납정리기한이란 수입과 지출의 출납사무를 ~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표 3>의 출납정리기한이란 수입과 지출의 출납사무를 마감하는 기한을 말한다. 즉,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 정산 지출이나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출납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64 하 4째줄	20×1년도 종료일까지 세입금을 고지하였으나 현금의 수납이 20×2년 2월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20×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20×1년도 종료일까지 세입금을 고지하였으나 현금의 수납이 20×2년 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20×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p165 하 4째줄	출납폐쇄기한(다음 연도 2월말)에 이루어진 현금의 수납은 당해연도(20×1년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출납폐쇄기한(세입금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일상경비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에 이루어진 현금의 수납은 당해연도(20×1년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p167 상 2째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세입금을 고지하였으나 다음 연도 2월 중에 수납이 이루어졌더라도 당해연도의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한다.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세입금을 고지하였으나 다음 연도 1월 10일에 수납이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한다.
p167 상 8째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에는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된다.
p178 상 1째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박스	삭제
p178 하 6째줄	주석 5번	삭제
p178 하 3째줄	주석 6번	삭제